

2019 정책Brief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

* 이 자료는 정책과제로 수행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수요분석 및 지역화 방안 ('19.5)" 일부를 재구성하여 작성하였음

연구진

이중섭_ 사회문화연구부 연구위원

송용호_ 사회문화연구부 전문연구원

2019 POLICY BRIEF

전북연구원 정책Brief

2019. 11. 27 vol.37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

CONTENTS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의 필요성	01
2. 사회복지시설 지역화의 가치와 방향	01
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화 방향	04

발행인 김선기

발행처 전북연구원

주소 전북 전주시 완산구 콩쥐팍쥐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1.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지역화 방안의 필요성

- 복지시설은 취약계층을 포함하여 지역주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시설로서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적절한 규모로 설치·운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함
- 전라북도는 시설의 유형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타지역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있어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기능의 복합화와 사업내용의 특성화 필요
-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인구십만명당 17.85개소로 전국 평균인 13.12개소보다도 많고, 노인여가복지시설도 노인인구천명당 15.44개소로 전국평균인 7.18개소보다도 많이 설치되어 있어 사회복지인프라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적정수준으로 설치되어 있음
- 현재 전라북도의 사회복지시설은 정량적 기준으로 인구대비 시설 수는 부족하지 않지만 도시와 농촌별로 그리고 복지시설의 유형별로 일정한 간극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복지시설을 지역의 복지수요에 맞춰 운영방식을 다변화하고 사업의 내용을 차별화해야 함
- 전라북도의 민간복지시설은 무엇보다도 지역간 수요에 따른 공급형태의 차별화를 통해 도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함
- 전라북도의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민간 복지시설의 유형별 고유사업 이외에 유관기관과의 연계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특성에 맞춰 특성화된 복지사업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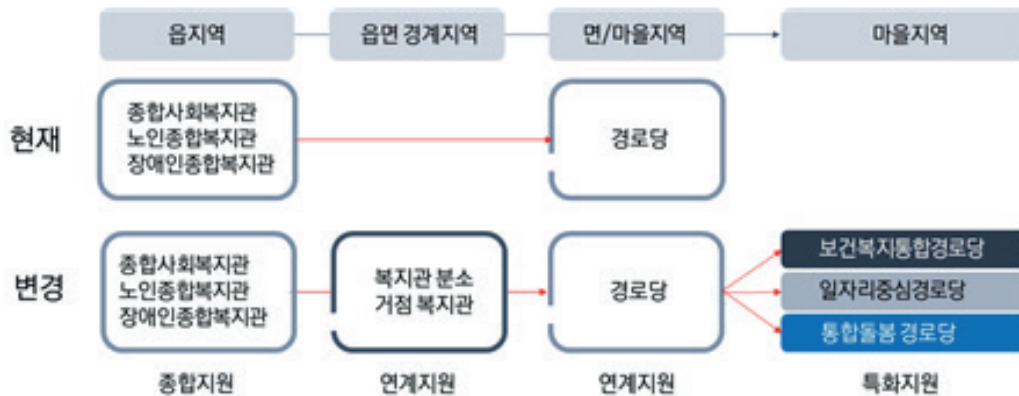
2. 사회복지시설 지역화의 가치와 방향

가. 지역별 민간복지시설 공급형태의 차별화

- 복지시설이 수요에 비해서 부족한 농촌지역은 현재 읍지역과 면지역 중심의 2단계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읍지역과 읍면경계지역 그리고 마을지역 등으로 3단계로 보다 촘촘하게 시설의 공급형태를 차별화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를 위해서는 읍지역의 주요 이용시설인 종합사회복지관과 노인종합복지관 그리고 장애인복지관의 분소 혹은 거점복지관을 읍면 경계지역에 최소 시군당 4개소~6개소를 설치하여 최소단위인 마을 혹은 면단위 지역주민의 복지서비스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소화 해야 함
- 읍면 경계지역의 복지관 분소 혹은 거점복지관은 전술한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등과의 사업연계를 위해 지역분소를 권역별로 설치하여 최소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단위인 경로당과 연계하여 보다 촘촘하게 지역주민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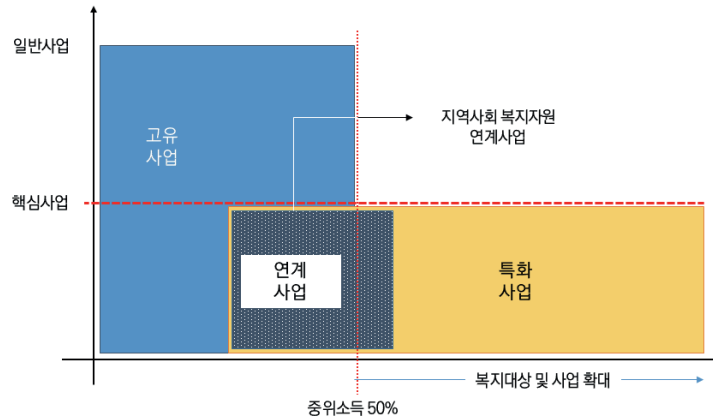
- 또한, 농촌지역의 경로당도 여가문화 중심의 단일 서비스보다는 지역수요에 맞춰 보건복지, 일자리 그리고 돌봄으로 특화된 3가지 형태의 경로당으로 차별화하여 마을맞춤형 복지 및 돌봄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1〉 지역별 민간복지시설의 구성(안)

나. 복지시설의 유형별 특성화와 복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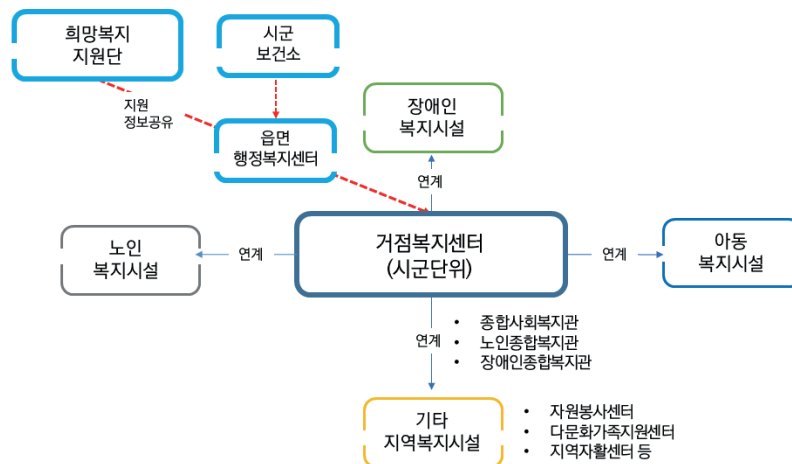
- 복지시설은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에 맞춰 중산층에게도 고유사업의 범위내에서는 지역의 다양한 복지자원과 연계하여 보다 풍부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고유사업 이외에도 지역주민의 복지수요와 지역의 복지환경에 대한 특성을 고려하여 민간이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를 특화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각각의 시설별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정한 고유사업이 설정되어 있고, 이들 고유사업은 해당 복지시설의 존재이유가 된다는 점에서 고유사업의 정체성은 유지하되 지역주민의 수요를 고려한 복지서비스의 특성화가 필요함
- 가령 지역아동센터, 노인양로시설, 경로당,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종합사회복지관 등은 연계 사업 중심으로 복지시설의 기능을 재편하고, 아동양육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은 특화사업 중심으로 복지시설의 운영형태를 재편하여 지역의 복지수요에 대응해야 함



〈그림2〉 복지시설의 특성화 및 복합화 방안

다. 민간 복지기관 간 복지사업의 구조화와 체계화

- 복지시설이 현재의 공급기반 그리고 향후 추가적으로 설치가 필요한 복지시설의 공급형태를 고려할 경우 다양한 형태의 복지시설간 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체계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현재는 대부분의 민간복지시설들이 각각의 고유사업의 범위내에서 각자의 제공자에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에만 한정되어 있고 이로 인해 각각의 시설들 간의 연계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 민간 복지기관들간의 연계를 통한 보다 체계적인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해서는 시군단위에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 조정할 수 있는 거점복지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그림 3〉 민간 복지시설의 복지서비스 제공기반 변경(안)

- 거점복지센터는 신규설치보다는 종합사회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 혹은 장애인종합복지관 중 한 개소를 거점복지센터로 지정하여 민간의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통합하고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또한, 거점복지센터는 민간의 복지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보다 촘촘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고유업무이외에도 시군단위의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시군보건소 그리고 읍면단위의 행정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민간차원의 사례관리와 함께 민간의 다양한 복지자원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취약계층이 다양한 지역의 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3. 사회복지시설 유형별 지역화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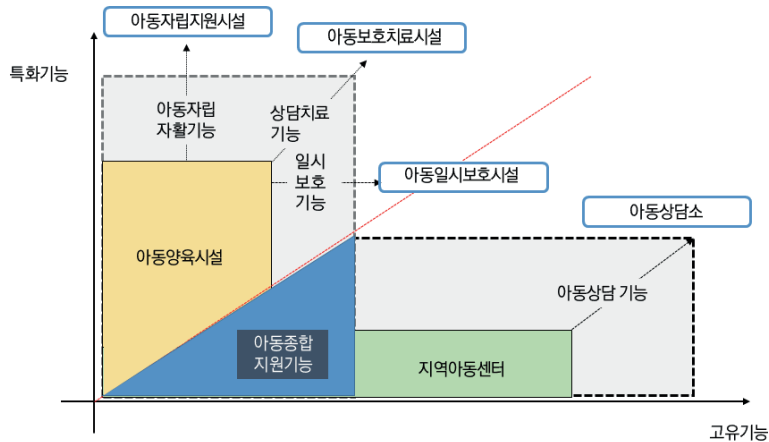
가. 아동복지시설의 지역화 방안

-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의 입소자 감소와 요보호아동 욕구를 반영한 시설의 유연한 운영을 위해 본연의 업무(고유업무)이외에 추가사업을 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 아동복지법 32조에서는 아동복지시설은 고유업무 이외에 아동가정지원, 아동주간보호, 아동전문상담사업, 학대아동보호, 공동생활가정, 방과후 아동지도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두고 있음
- 또한, 시설내에서 생활하는 입소현원이 정원의 50% 미만에 불과한 시설에 대해서는 아동보호치료시설이나 퇴소한 아동을 위한 자립지원시설 등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전환하도록 권고하고 있음
- 실제로 전라북도 사회복지실무자 대상 조사에서도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상담시설과 지역아동센터와의 통합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지역아동센터는 아동양육기능 및 상담기능에 더하여 종합사회복지관의 기능이 통합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음

〈표 1〉 아동양육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한 시설의 유형

구분	아동 양육 (보호)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요양)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아동양육시설		30.8	27.5	1.7	3.6	2.0	1.7	2.0	0.3	1.0	3.6	12.3	0.7	4.6	8.3
아동상담시설	30.0		31.1	0.8	1.6	0.8		1.2	1.6	0.8	2.3	14.0		4.7	10.9
지역아동센터	25.0	30.9			2.2	1.5	0.7	0.4	0.4	4.4	1.1	20.2	1.5	5.1	6.6

- 따라서 아동양육시설은 아동종합지원센터로 전환하거나 고유기능을 축소하고 아동자립 기능과 상담치료기능 그리고 일시보호기능을 확대하여 일부 시설의 공간을 아동자립지원시설과 아동보호치료시설 혹은 아동일시보호시설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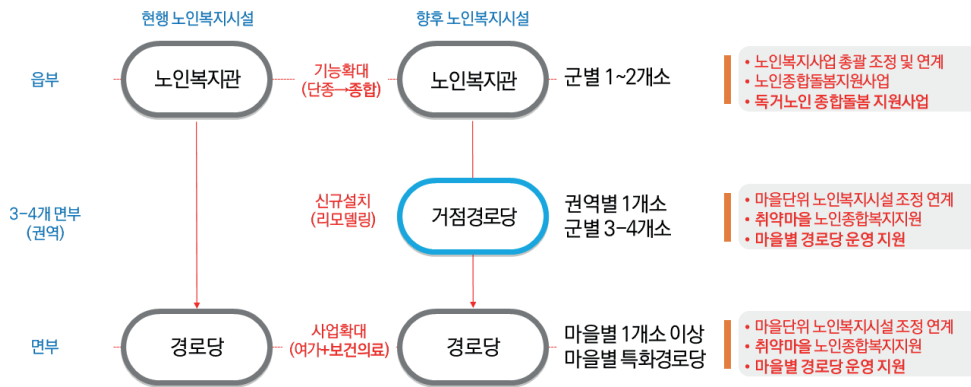
〈그림4〉 전라북도 아동복지시설 개편 방안

나. 노인복지시설

- 노인복지시설은 노인의 건강상태와 돌봄제공자의 유무에 따라 각 시설별로 추가적인 기능의 확대 혹은 시설의 전환 등이 요구됨
- 특히,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독립생활의 정도 그리고 와상의 정도에 따라 그 기능이 구분 되어 있는 노인복지시설의 각 유형에 따라 전라북도의 노인의 복지수요와 공급의 특성에 따라 운영과 기능을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 경로당의 경우 도시경로당은 추가적인 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반면, 농촌지역의 경우 완주 등 일부지역을 제외하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높다는 점에서 농촌지역은 경로당의 추가설치를

제한하고, 도시지역은 경로당이 설치되지 못한 동지역은 신규설치 혹은 마을회관을 활용한 여가문화프로그램의 제공기반의 확대가 필요함

- 또한, 농촌지역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복지수요는 매우 높다는 점에서 경로당 중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경로당을 거점경로당으로 조성하여 노인을 대상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
- 한편, 농촌지역은 현재의 경로당 설치개수가 수요대비 과잉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업의 목적과 대상 그리고 서비스 내용의 개편이 요구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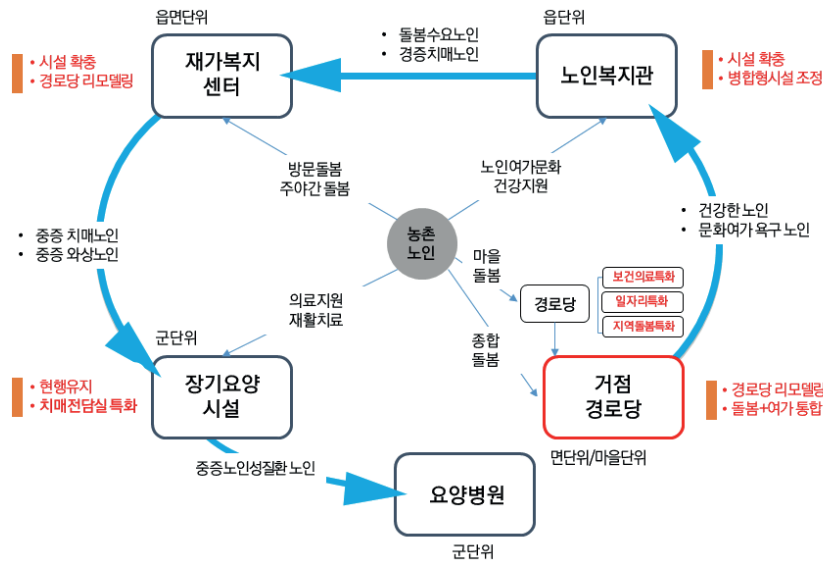
〈그림 5〉 경로당 시설 개선 방향 및 목표

- 경로당의 시설개편은 거점경로당 조성을 통해서 단순한 여가중심의 시설을 보건의료, 일자리, 돌봄이 통합적으로 제공될 수 있는 공간으로 재구성해야 함

	현재	변경			
이용 대상	건강한 노인	건강한 노인	병약한 노인		
시설 유형	여가 시설	돌봄 시설	일자리 지원시설	공동 거주시설	
사업 내용	여가문화 program	주야간 돌봄	시니어 농장운영	공동생활 가정	마을 보건의료

〈그림 6〉 경로당(마을회관) 운영계획

- 이용대상도 건강한 노인에서 병약한 노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의 유형도 여가만이 아닌 돌봄, 일자리지원 그리고 공동거주가 가능한 주거시설로 확대되어야 함
- 경로당의 사업의 내용도 주야간 돌봄, 노인일자리 제공, 공동생활가정의 운영 그리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확대해야 함
- 노인복지시설의 공급형태에 따른 시설의 기능개선이 이루어질 경우 전라북도의 노인복지시설의 운영형태는 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거점복지센터, 재가복지센터, 장기요양시설 등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서 보다 체계적인 돌봄안전망이 구축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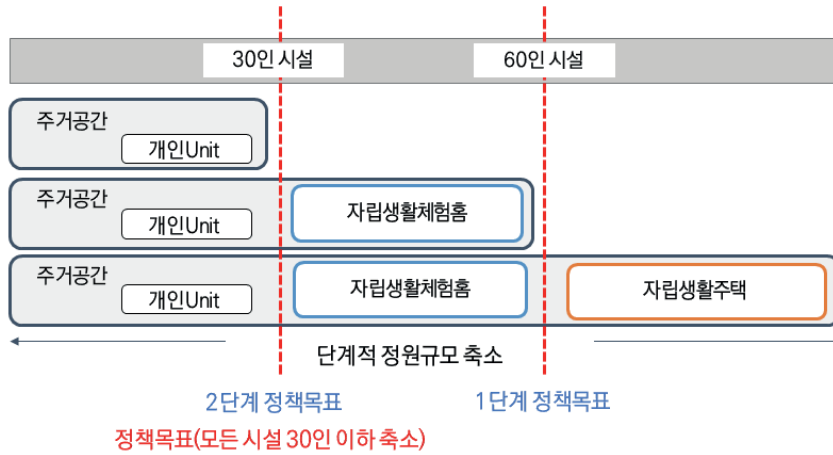


<그림7> 전라북도 노인복지시설 운영체계(안)

다. 장애인복지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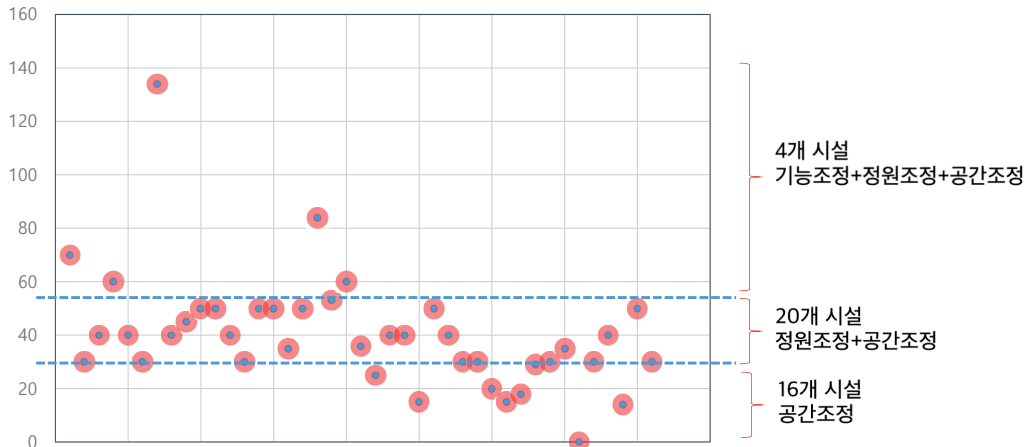
- 장애인복지시설 중 장애인거주시설은 현재 정원충족율이 매우 낮은 수준이고 정부의 장애인 거주시설 소규모화 정책으로 이해 현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임
- 정원규모는 변동이 없는데 반해 현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장애인거주시설의 개편은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장애인거주시설 수요추정에서 전체 장애인의 지속적인 증가에도 장애인 생활자는 2020년 1.8천명에서 2030년 1.9천명 정도 추정되고 있고, 현재의 장애인거주시설의 입소 정원이 2.0천명인 점을 감안하면 최대치를 감안하더라도 2028년도 까지는 장애인거주시설이 축소가 불가피함

- 장애인복지시설의 개편은 우선 1단계로 장애인거주시설 정원이 60명을 초과하는 4개 시설에 대해서 기능조정과 정원조정 그리고 공간조정을 통해서 단계별로 30인 이하의 시설로 전환해야 함
- 30인 이하의 시설로 전환된 이후 유휴공간에 대해서는 개인별 주거공간의 확대 그리고 자립생활체험홈 및 자립생활주택의 병합 등의 조치 필요
- 30인 이상 60인 미만 시설에 대해서는 정원조정과 공간조정을 통해서 장애인거주자의 타시설 자립을 유인해야 함



〈그림8〉 장애인 거주시설 수요공급 조정 방안

- 이들 시설도 정부가 정한 30인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원의 단계적 축소와 함께 장애인 자립생활체험홈의 의무적 설치를 통한 자립준비시설로의 전환이 필요함



〈그림9〉 장애인거주시설 입소정원 기준 개선방향

〈표 2〉 장애인 거주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능한 시설

구분	아동 양육 (보호) 시설	아동 상담 시설	지역 아동 센터	장애인 거주 시설	장애인 그룹홈	장애인 복지관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노인 양로 (요양) 시설	노인 재가 복지 시설	노인 종합 복지관	경로당	지역 사회 복지관	지역 자활 센터	다문화 센터	여성 복지 시설
장애인거주시설	4.2	1.1	0.4		33.7	27.3	22.0	3.0	1.1	0.4		2.3	3.4		1.1
장애인그룹홈	4.7	1.6	1.6	28.5		23.8	22.3	2.7	1.2	0.8	1.2	5.1	2.3	1.6	2.3
장애인복지관	0.8	2.4	2.4	18.8	23.3		27.8	1.6	2.0	2.9	0.8	9.0	4.9	2.0	1.2
장애인직업재활시설	1.2	0.4	0.8	20.4	25.0	29.2		0.8	1.2	2.7	1.2	6.2	9.6	0.8	0.8

- 현장실무자의 조사결과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장애인거주시설과 통합 및 연계가 가능한 시설은 주로 장애인그룹홈 등 소규모시설과 직업재활시설 그리고 장애인복지관과 같은 이용 시설이 포함되어 있음
- 따라서 장기적으로는 현재 장애인거주시설을 모두 30인 이하로 소규모화하고, 이를 위해 거주시설내 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지원시설의 병합설치 그리고 정원조정을 통한 거주인원의 제한 등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정책Brief
2019. 11. 27 vol.37



발행인_김선기

발행처_전북연구원

주소_전북 전주시 완산구 공취팔쭈로 1696

TEL_063)280-7100 FAX_063)286-9206

※정책브리프에 수록된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전라북도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지난 호 정책브리프를 홈페이지(www.jthink.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www.jthink.kr